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등>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4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2
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6
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금 부과	9
※ 참고자료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4.
3. 회부연월일 : 2025.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

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5, 제25조의9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과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안 제26조의5).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26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5(<u>가맹점의</u>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5(<u>가맹점 등의</u> 준수사항) ① ----- ----- ---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2. (현행과 같음)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신 설>

<신 설>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신 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4.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 ⑥ (생략)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 또는 환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지류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과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¹⁾와 달리 일부 브로커 조직 등이 불법적인 현금화(상품권깡)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0월과 11월에 지류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 가맹점(449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점 준수사항을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오세희의원 보도자료, “불법 브로커 먹튀 차단! 온누리상품권 부당이득 2배 환수 법안 대표 발의”, 2025.3.4.

장철민의원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매출 1·2·3위 ‘페이퍼컴퍼니’ 불법유통 조직범죄 드러나”, 2024.10.24.

위반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를 훼손한 22곳을 고발하고,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바,³⁾

종합 개선방안에는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재판매(상품권 사용자와 상품권 매매업자 간 거래) 금지,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금지, 상품권 구매대행(불법매집) 금지 및 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 등 상품권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반영한 것으로,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안 제26조의5제1항제3호는 개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용자로부터 수취한 상품권이 도매시장 등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의 불법적인 현금화 문제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6조의5제1항제4호는 개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매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 없이 구매대행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차익⁴⁾을 취하는 행태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3)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로 마련”, 2024.11.1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 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2024.12.19.

4) 가령,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1만원(10%) 할인된 9만원에 구매

이해됨.

셋째, 안 제26조의5제4항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상품권 재판매⁵⁾를 금지하고 있는데,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⁶⁾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제3자를 동원한 상품권 매집 행위의 경우 부당한 환전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의9 신설).

하고, 개별가맹점이 이 상품권을 9만 5천원에 매집하여 10만원으로 환전하면 상품권 사용자와 개별가맹점은 각각 5천원의 환전차익을 취할 수 있을 것임.

5)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품권 구매자(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개정안은 상품권 구매자(사용자)가 이를 상품권 매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9(부당이득의 환수)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과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되면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부당이득금 현황 및 현행법에 따라 개별가맹점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⁷⁾(참고자료 1)를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성 및 제재의 실효성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이와 관련하여, 2024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유로 고발한 가맹점에 대하여 과액한 부당이득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고발(2024년) 대상 가맹점의 부당이득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가맹점명	처분제목	과태료 부과액	부당이득금
1	000농산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2,276.8
2	00상회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3,690.6
3	00농산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731.1
4	00농산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747.6
5	00농산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650.8
6	000상회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266.5
7	00유통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82.8
8	000상회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87.8
9	00유통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139.5
10	00상사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113.0
11	00상회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2.5	79.6
12	000	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	5.0	95.5
합계				8,961.6

주: 부당이득금 액수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산정한 추정치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개별가맹점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안 제26조의5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권의 재사용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 환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환수 사유에서 제외하되, 상품권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과

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행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한 개별가맹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이중제재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금 부과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제72조(벌칙) ① (현행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와 같음)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⁸⁾하고 있음.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경우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가맹점 등록 취소⁹⁾ 등 현행법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브로커 조직 등을 통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가맹점 업무 수행은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브로커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벌칙 조항 신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1호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300
3) 3차 이상 위반		500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항 제1호	
1)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	법	

행한 환전대행가맹점	제74조제1항 제2호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1,000
나) 2차 위반		1,5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2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2호	300